

예 천 군



군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.

제1323호 2021. 9. 30.(목)

선 람	기 관 의 장

고 시

- 예천 도로구역(군도)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고시(예천군 고시 제2021-69호)

공 고

- 예천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(예천군 공고 제2021-1139호)

회 람									
--------	--	--	--	--	--	--	--	--	--

발 행 예천군 편찬 기획감사실(전화 650-6066)

예천군 고시 제 2021 - 69호

예천 도로구역(군도)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고시

예천 도로구역(군도) 결정(변경)에 대하여 「도로법」 제25조에 따른 도로구역 결정(변경)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의 규정에 따른 군 관리계획 결정(변경), 같은 법 제32조 및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.

2021년 09월 30일

예 천 군 수

1. 도로구역 결정(변경)내용

① 구분	② 종류	③ 노선 번호	④ 노선명	⑤위치	⑥ 면적(m ²)	⑦ 기점	⑧ 종점	⑨ 주요 통과지	⑩ 총연장(km)
기정	군도	8호선	군도 8호선	유천면 고산리 ~ 용궁면 가야리	398,733	고산리 381	가야리 138	—	18.4
변경	군도	8호선	군도 8호선	유천면 고산리 ~ 용궁면 가야리	402,041	고산리 381	가야리 138	—	18.4
기정	군도	9호선	군도 9호선	풍양면 청곡리 ~ 용궁면 읍부리	135,580	청곡리 61	읍부리 148-4	—	7.5
변경	군도	9호선	군도 9호선	풍양면 청곡리 ~ 용궁면 읍부리	136,190	청곡리 61	읍부리 148-4	—	7.5
기정	군도	21 호선	군도 21호선	개포면 풍정리 ~ 예천읍 석정리	179,540	풍정리 169-6	석정리 64-1	—	11.7
변경	군도	21 호선	군도 21호선	개포면 풍정리 ~ 예천읍 석정리	180,840	풍정리 169-6	석정리 64-1	—	11.7

2. 도로구역 결정(변경 또는 폐지) 사유 : 군도 확포장 및 장송교 개체공사에 따른 도로구역 변경

3.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: 게재 생략(예천군 건설교통과 비치)

4 군관리계획 결정(변경)조서

가. 교통시설

(1) 도로

구분	규 모				기능	연장 (m)	기점	종점	사용 형태	주요 경과지	최초 결정일	비고
	등급	류별	번호	폭원 (m)								
기정	소로	1	8나	10	집산 도로	9,559	장송리 451-4	고산리 381	일반 도로	-	예고2009-635 (09.11.20)	군도 8호선
기정	소로	1	8나	10	집산 도로	9,559	장송리 451-4	고산리 381	일반 도로	-		
기정	소로	1	9가	10	집산 도로	2,571	청곡리 474-5	향석리 905-5	일반 도로	-	예고2009-635 (09.11.20)	군도 9호선
변경	소로	1	9가	10	집산 도로	2,490	청곡리 472-6	향석리 905-5	일반 도로	-		
기정	소로	1	21가	10	집산 도로	4.903	풍정리 198-2	손기리 66-3	일반 도로	-	예고2009-635 (09.11.20)	군도 21호선
기정	소로	1	21가	10	집산 도로	4.903	풍정리 198-2	손기리 66-3	일반 도로	-		

■ 교통시설(도로) 변경 사유서

변경전 도로명	변경후 도로명	변 경 내 용	변 경 사 유
소로1-8나호선	소로1-8나호선	- 일부구간 선형변경 - B=10m, L=9,559m	장송교 개체공사에 따른 도로 구역 변경 선형 반영
소로1-9가호선	소로1-9가호선	- 일부구간 선형변경(시점부) - B=10m, L=2,571m→2,490m 감)81m	군도 확포장에 따른 도로 구역 시점부 변경 선형 반영
소로1-21가호선	소로1-21가호선	- 일부구간 선형변경 - B=10m, L=4,903m	군도 확포장에 따른 도로 구역 변경 선형 반영

5. 군관리계획 결정(변경) 지형도면 고시 등 : 게재 생략(예천군 건설교통과 비치)

6. 기타 자세한 내용은 예천군 건설교통과(054-650-6334)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예천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
「예천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」를 개정함에 있어 군민들에게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「행정절차법」 제41조 및 「예천군 조례·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」 제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.

2021년 9월 30일

예 천 군 수

1. 개정이유

2021년 12월 31일로 만료되는 예천군 노인복지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·관리를 위해 위원회 설치 등의 관련 조항을 일부 개정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기금의 존속기한 연장(안 제2조의2)

- 기금의 존속기한을 “2021년 12월 31일”에서 “2023년 12월 31일”로 연장함.

나.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위원을 당연직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(안 제6조제4항)

-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을 주민복지실장으로 하며 그 외는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함.

3. 개정조례안

붙임과 같음

4. 의견제출

이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,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0월 20일 까지 아래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예천군수(참조: 주민복지실장)에게 서면이나 전자우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: 찬·반 여부의 그 사유

정(안)	수정(안)	수정사유

나. 제출자의 성명(법인 및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), 주소, 연락처, 기타 참고사항 등

다. 제출 방법 : 서면, 팩스, 전화, 전자우편, 방문 등

라. 보내실 곳

- 주 소 : 우)36826 경북 예천군 예천읍 충효로 111 예천군 주민복지실
- 전 화 : 054-650-6168 팩스 : 054-650-6969
- 전자우편 : ypcs0116@korea.kr

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

□ 자치법규명 : 예천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
일부개정조례안

○ 성명(단체명) :

○ 주 소 :

○ 전 화 번 호 :

정(안)	수 정(안)	수정사유

예천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예천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2조의1을 제2조로 한다.

제2조의2 중 “2021년”을 “2023년”으로 한다.

제6조제3항 중 “되고”를 “되고,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
하며”로 하고,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“위원”을 “당연직 위원은
주민복지실장으로 하고, 위촉직 위원”으로, “한다.”를 “하며, 성별 균형을
고려하여 위촉한다.”로 하며,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조의1(기금의 설치) ①·② (생략)	제2조(기금의 설치) ①·② (현행과 같음)
제2조의2(기금의 존속기한) 기금의 존속기한을 <u>2021년</u> 12월 31일까지로 한다.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예천군 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	제2조의2(기금의 존속기한) ----- ----- <u>2023년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제6조(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) ①·② (생략)	제6조(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) ①·② (현행과 같음)
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,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	③ ----- 되고, 위원은 <u>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며</u> ----- --.
④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, 제2호에 해당하는 민간전문가를 3분의 1 이상으로 한다. 다만 <u>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위촉한다.</u>	④ <u>당연직 위원은 주민복지실장으로 하고, 위촉직 위원</u> ----- ----- 하며, <u>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위촉한다.</u>
1. 2. (생략)	<단서 삭제> 1. 2. (현행과 같음)
⑤ (생략)	⑤ (현행과 같음)